#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공포 제2026-5호(개정 2026. 10.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및 장안대학교 학칙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적용범위)** 대학평의원회는 장안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삭제>

**제4조(구성)** 평의원회 평의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9.)

**제5조(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2.29.)

1. 교원 5인 :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원
2. 직원 3인 : 직원 대표
3. 조교 1인 : 조교 대표
4. 학생 1인 : 재학생 중 대표
5. 기타 1인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인사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위촉은 해지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학생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개정 2026.10.15.)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한다. (신설 2024.2.29.)

② 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평의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2.29.)

②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평의원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평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3인이 서명날인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제11조(평의원의 의무)**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은 본 대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정)** ① 총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에 출석한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의장은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